골板紙包裝·物流産業政策
Corrugated Packaging & Logistics Industry Policy

이 난은 골판지포장 산업과 물류 산업 관련 정부 정책과 산업계 정책 건의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工基盤技術 保鮮골板紙도 創業時 法人稅 50%減免
技術集約型中小企業의確認等에 關한要領 告示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조세감면 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5년간 50%를 감면하는 기술집약형 기업의 확인 등에 관한 요령을 고시 하였다.

이 기술집약형 기업은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별표 10에 규정된 10개 사업이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 하는 사업도 해당이 되며, 이로서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 제안 도출하여 산학연체로 연구개발 완료한 공업기반기술과제 『보선골판지포장 제조기술』을 창업 기업화할 경우 법인세 등의 50% 감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 중소기업청의「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확인등에 관한 요령」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확인등에관한 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98-6 〈98. 4. 3〉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13조 제2항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및 세무서장이 행하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제2항 별표10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의 해당여부 확인 등에 과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확인기관"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별표10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업종 또는 품목의 사업임을 확인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라 함은 조세감면처분과 관련한 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사항별 해당기관은 다음 과 같다.

가. 지방세 중 취득세, 등록세 감면업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나. 지방세 중 재산세 감면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
다. 국세 중 법인세, 소득세 감면업무는 세무서장

제3조 (기술집약형중소기업 사업의 범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제2항 별표10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 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2. 중소기업 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계열화 품목의 사업
3.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신기술의 사업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한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사업
4.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을 기업화하는 사업
5.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
6.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 및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의 성과 또는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7.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2의 사업
8.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부터 출자받는 창업자(당해 출자의 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가 영위하는 사업
10. 중소기업청장이 기술개발촉진과 부품 및 소재의 수입 대체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

제4조 (확인기관)

제3조 각호에 게기한 사업에 해당여부 확인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 제8호의 경우는 별도 확인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기히 관계기관이 발급한 사실 확인서 또는 해당증명서 사본으로 처리
2. 제2호, 제7호, 제10호의 관련사업은 중소기업청장
3. 제3호의 관련사업은 과학기술부장관
4. 제9호의 관련사업은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 대표이사

제5조 (확인절차)

①기술집약형중소기업확인을 받고자 하는자는 확인기관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2호, 제7호, 제10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기술집약형중소기업확인신청서(별지1호서식)2부
   나. 해당제품 설명서 1부
   다. 기타 참고서류
2. 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기술집약형중소기업확인신청서(별지 2호서식)2부
   나. 해당제품 설명서 1부
   다. 제품기술 설명서 1부
   라. 고시기술의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제3조 제9호의 경우에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확인신청서(별지 3호서식)2부

② 확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관계규정·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증빙서류)

집행기관은 제3조 각호에 게기한 사업의 해당여부를 다음 각호의 1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호는 연구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및 연구결과 보고서
2. 제2호, 제7호 및 제10호는 확인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 확인서
3. 제3호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발행하는 신기술 인정서 및 신기술 명세서 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확인서
4. 제4호는 실용신안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증 사본
5. 제5호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 통보서
6. 제6호는 연구기관 등과 체결한 계약서 및 연구결과 보고서
7. 제8호는 특허법 제86조에 의한 특허증 사본
8. 제9호는 확인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확인서

제7조 (집행기관의 준수의무)

집행기관은 조세감면과 관련한 업무처리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업종 및 품목에의 해당여부 확인은 제6조 증명서류에 의하여야 하며, 그 외의 불필요한 추가서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이행실태조사 및 시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관련한 각종 민원업무 처리시 이 요령이 정한 바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확인기관 및 집행기관소속공무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당해기관의 장에게 촉구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권한의 위임, 위탁)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 확인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0조(요령의 개정)

확인기관은 제5조 관련사항의 변경 또는 확인업무를 위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요령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발급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확인서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지1호 서식〉

기술집약형중소기업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상 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전 화 번 호	

확인신청내용

⑦ 표준산업분류 (5단위)	⑧ 업 종	⑨ 품 목 명	⑩ 규격 및 용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9항 및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8-6호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10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사업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지방중소기업청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해당 제품설명서	없 음
2. 기타 참고서류	

위와 같이 신청한 내용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사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중소기업청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별지2호 서식〉

기술집약형중소기업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상 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전 화 번 호	

확인신청내용

⑦ 표준산업분류 (5단위)	⑧ 업 종	⑨ 품 목 명	⑩ 규격 및 용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9항 및 중소기업청 고시 제 1998-6호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10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사업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해당 제품설명서 2. 제품기술설명서 3. 고시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위와 같이 신청한 내용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사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 학 기 술 부 장 관 ㊞

〈별지3호 서식〉

기술집약형중소기업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상 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전 화 번 호	

확인신청내용

⑦ 회사명	⑧ 대표자	⑨ 자본금	⑩ 설립일, 설립예정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투자			⑭ 지분율
				⑪ 투자 회사명	⑫ 투자 일자	⑬ 투자 금액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9항 및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8-6호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10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사업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지방중소기업청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위와 같이 신청한 내용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사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창업투자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下都給 代金 支給어음割引率 公正 去來委員會17~19%로告示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 1998-4호 98-5.12)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경우 적용되는 어음할인율을 고시하였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4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어음의 만기일이 발행일로부터 90일이내인 경우에는 연 17%로 하며, 어음의 만기일이 발행일로 부터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연 19%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고시 시행이전에 적용되는 어음 할인료에 대해서는 어음에의한 하도급대금지급시의 할인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3-5호)를 적용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3-5호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 할인율)는 폐지한다.

中企廳 98 中小企業 構造改善事業 公告 支援規模 8,700億원 · 年利 9.5%

중소기업청에서는 1998년도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동 지원규모, 대상사업 유형, 대출조건, 지원절차등은 다음과 같다.

1998년도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시행 계획

1.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시행계획 개요

가. 자금지원규모 : 8,700억원

상반기 : 6,000억원

하반기 : 2,700억원

※ 상 · 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함으로써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향후 추가재원(IBRD 지원자금 등)이 확보 될 경우 확대 시행

나. 사업유형 : 제조업기반구축사업, 지식 · 정보 산업 육성사업, 소기업 육성사업, 자동화 시설 대여사업

다. 대출조건

○ 대출금리 : 연 9.5%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거치기간 3년포함)

— 운전자금 : 3년(거치기간 1년포함)

라. 신청 및 접수

○ 상 · 하반기로 나누어 월별 신청 · 접수

— 상반기 : 1998년 2월 하순부터 상반기 배정자금 소진시까지 매월별로 신청접수(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 단 2월은 3월 10일까지 접수)

— 하반기 : 1998년 8월부터 하반기 배정자금 소진시까지 매월별로 신청접수(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매월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업체 선정 및 통보

○ 신청 및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대출취급은행 :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전 은행

2. 사업유형별 신청자격

생산과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중소기업으로서 해당사업 유형의 신청자격을 갖춘 업체

〈제조업기반 구축사업〉

○ 제조업 전업율이 50%이상이며,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 다음의 경우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함 (제조업체의 경우 전 사업유형에 적요함)

· 공장등록증 보유업체가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배법"이라 한다)제13조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신청 또는 승인, 건축허가를 득한 이전에 정공장 또는 분공장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공배법 제13조에 의한 공장설립 인 ·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한 이전예정지로 이전하는 경우

○ 2년이상 가동중인 비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체가 관련

분야의 제조업태를 추가 또는 제조업으로 사업전환하는 업체로서 공배법 제13조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이내인 경우, 또는 6개월이내에 준공가능한 경우

— 다만, 이 경우 자금지원을 받고 제조업 추가 또는 사업전환후 2년 이내 제조업 전업율 30%이상 유지할 수 있는 기업

〈 지식 · 정보산업육성사업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 별표 〉에서 정한 정보처리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영상산업

〈 소기업육성사업 〉

○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제조업영위 소기업(제조업 전업율 50% 이상)

〈 자동화 시설대여사업 〉

○ 생산성 및 품질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화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제조업영위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3. 사업유형별 대출한도

○ 기 지원대출 잔액을 포함하여 동일업체당 40억원 이내(자동화시설 대여는 15억원 이내)에서 사업유형별로 달리 적용

○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100%이내

○ 운전자금 : 연간 최고 5억원 이내

※ 그간 구조개선 사업자금을 지원받아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운전자금만 별도 지원 가능

4. 지원업체 선정기준

가. 선정기준

기업경영실태 파악에 필요한 재무상태를 평가한 후, 기술력 · 성장성 및 안정성 등의 기업경쟁력, 기업관리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지원업체 선정

— 재무상태 평가는 100점중 50점이상이고 대출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본 심사대상으로 선정

— 본 심사는 기업경쟁력, 기업관리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종합 평가하여 B등급 이상인 업체를 승인대상으로 함.

· 기업안정성등 중요항목이 기준 미달인 업체는 선정 제외

○ 금융거래가 정상적인 기업이어야 함.

— 신용평가기관에 조회결과 적색거래처등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배제

나. 평가시 우대 업체

○ 기술, 경영, 품질관련 교육이수 업체

○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월드컵관련 상품제조 업체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에 성공한 업체

○ 자동화, 정보화등 기술지도 이수업체

○ 노동부 지원 노사협력 우량 업체

○ ISO품질, 환경인증, 100PPM 운동참여 및 달성업체

○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

○ 20인 이하는 소기업

○ 여성경제인이 경영하는 기업

○ 수출업체

다. 평가시 감점 업체

○ 중소기업 유예기간인 업체

○ 자금 추천을 받고서 자금전액 포기 또는 실효업체

5. 자금지원방법

가. 융자

○ 시설자금 : 대출취급은행의 기성고 확인후 단계별로

구 분	제조업기반구축사업	지식정보산업 육성사업	소기업육성산업	자동화시설임대사업
시설자금	연간 20억원 이내	연간 10억원 이내	연간 10억원 이내	연간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연간 3억원 이내	연간 2억원 이내	—
지원한도	연간 총20억원 이내	연간 총10억원 이내	연간 총10억원 이내	연간 총10억원 이내

지원

○ 운전자금 : 전액지원

나. 시설대여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동화시설대여 기준에 따름.

6. 단위사업별 지원자금 배분

(단위 : 억원)

사 업 유 형	금 액
제조업기반구축	5,500
지식·정보사업육성	1,000
소기업육성	2,000
자동화시설대여	200
계	8,700

※ 총 지원금액의 40%는 운전자금으로 지원

7. 추진체계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별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후 기업진단 및 평가를 거쳐 선정위원회에서 지원업체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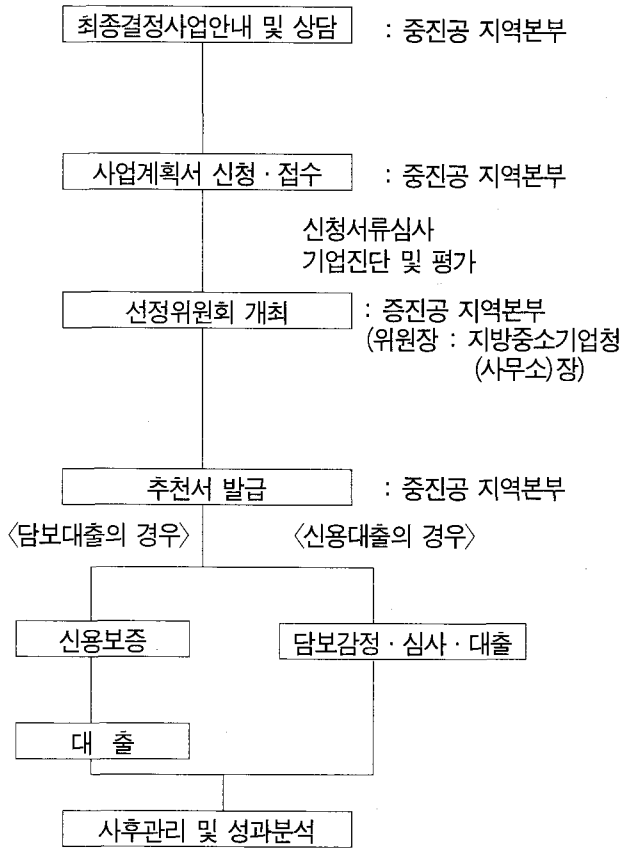

〈 별표 〉

지식·정보산업 지원대상 업종 범위

○ 정보처리업 :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74214 산업시스템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215 기계관련 엔지니어링 및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74216 전기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업

74217 환경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7422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4991 패션디자인업

○ 영상산업 : 아래 업종중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는 만화영화 컴퓨터그래픽, 버츄얼 리얼리티 등의 제작업체에 한함.

92111 일반영화 제작업

92112 광고영화 제작업

92113 영화제작 관련 서비스업

科技處, 中小企業技術支援事業 公告

과학기술처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출연기관, 대학(우수 연구센터〈SRC/ERC포함〉)국·공립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지원을 활용하는 수탁연구지원사업, 기술무상양허 사업, 기술자문사업, 창업지원사업등 4가지 유형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 하였다.

동 과학기술처 공고 제1998-2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시행계획공고

1. 중소기업 수탁연구지원사업(유형 I)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고 있는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에따른 문제점을 과학기술처 출연 연구기관에 위탁 연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 및 기술경쟁력 향상

나. 지원내용

○ 고학기술처 출연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비중 80% 범위내에서 대응자금(Matching Fund)으로 지원

— 시험분석, 측정, 검사 등에 해당하는 과제도 연구개발과 관련될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다. 신청대상기관

○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과학기술처 산하 출연연구기관

라. 신청절차 및 방법

○ 연구개발을 위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위탁연구개발 의뢰서를 한국과학기술원(신기술창업지원단)에 제출, 한국과학기술원(신기술 창업지원단)은 중소기업이 제출한 위탁연구 개발의뢰서를 검토하여 기술지원기관에 연구개발을 의뢰.

○ 의뢰받은 기술지원기관은 연구책임자를 추천하여 한국과학기술원(신기술창업지원단)에 통보. 한국과학기술원(신기술창업지원단은 기술지원기관에서 통보한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에 통보)

○ 과제신청서는 기술지원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중소기업의 대표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작성하고 기술지원기관을 통하여 한국과학기술원(신기술창업지원단)에 제출 .

2.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무양상향허 제6차사업(유형Ⅱ)

가. 사업목적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우수연구센터(SRC/ERC)포함), 국·공립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를 중소기업에 적극 이전하여 해당기술의 사업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도모함.

나 지원내용

○ 기술의 무상양허 및 기업화 지원

— 기술보유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양허하고 무상양허된 기술이 기업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기술보유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우수연구센터(SRC/ERC)포함), 국·공립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데 따른 소요비용중 80%는 정부에서 부담(20%는 기업에서 부담)

다. 신청대상기관

○ 현재 실험실 규모이상의 완성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우수연구센터(SRC/ERC)포함) 국·공립연구기관과 보유기술 이전을 원하는 중소기업

라. 신청절차 및 방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우수연구센터(SRC/ERC)포함), 국·공립연구기관 등 기술보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로 보유하고 있는 이전대상기술을 한국과학기술원(신기술창업지원단)에 등록

○ 이전 대상기술을 무상향허 받고자하는 중소기업은 기술보유기관이 등록 기술을 열람하여 해당기술지원기관 및 사업책임자를 선정.

과제신청서는 기술지원기관의 사업책임자와 중소기업의 대표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작성하여 기술지원기관을 통하여 한국과학기술원(신기술창업지원단)에 제출

3. 중소기업 기술자문사업(유형Ⅲ)

가. 사업목적

○ 과학기술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능려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연구개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술자문, 기술지도, 기술교육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

나.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기술에 대한 기술자문, 기술지도, 기술교육등 지원

다. 지원대상기관

기술자문을 요청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애로기술자문, 기술지도, 기술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과학기술처 출연연구기관

라. 신청절차 및 방법

○ 기술자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기술자문의뢰서를 한국과학기술원(신기술창업지원단)에 제출. 한국과학기술원(신기술창업지원단)은 중소기업이 제출한 기술자문의뢰서를 검토하여 관련 기술지원에서 통보한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에 통보

○ 과제신청서는 기술지원기관의 연구원과 중소기업의 대표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작성하고 기술지원기관을 통하여 한국과학기술원(신기술창업지원단)에 재출

※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

○ 한국과학기술원(KAIST)내 신기술창업지원단(HTVC)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벤처경영자/연구원/교수의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프로그램제공

○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신기술창업지원단(HTVC)에 문의(042-869-4739, 4794, 4795)

— Home Page :http://htvc.kaist.ac.kr
한국과학기술원 신기술창업지원단 창업지원단

— (우)305-70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73-1

4. 신청기간

○ 신청기간 : 1998년 2월 17일 - 1998년 9월 30일 (연중수시)

5. 접수 및 문의처

○한국과학기술원 신기술창업지원단 기술기획팀(042-869-4731, 4793) (우)305-70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73-1

6.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홈페이지

○ 홈페이지 주소 :http//bomun.kaist.ac.kr/-tjum/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신청양식, 세부내용, 운영요령)등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며, 사업신청서 제출 및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업무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처리합니다.

정부, 98 財特會計 融資運用金利

정부가 발표한 각 부처별 1998년도 재정융자 특별회계 융자 계정의 운용금리 결정기준 변경 내용 및 1998년도 융자(예탁)금리 및 대출금리 결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98년도재특회계 융자운용금리 결정내용

1. 운용금리 결정기준 변경내용

⊙ 1998년부터 융자금리는 종전 특별우대금리를 폐지하여 우대 금리로 통합운용하되, 운용금리의 결정기준율 100%p 상향조정

- 우대금리 : 조달금리의 70%수준, 일반금리 : 조달금리의 80% 수준

⊙ 대출금리는 융자금리에 취급기관 수수료(0.1%-1.0%)를 더하여 결정하되, 기금 및 특별회계 또는 일부 이차보전을 받는 자금의 경우 자체 운용사정 등에 따라 별도의 대출금리를 결정하여 운용

2. 1998년도 재특융자 세부사업별 금리 결정내역

⊙ 운용금리 : 우대금리 년 7.5%, 일반금리 년 8.5%

⊙ 적용대상 : '96년도부터 재특 융자계정으로부터 변동금리로 융자 또는 예탁받은 사업

⊙ 적용기간 : 1년('98.1.1-'98.12.31). 다만, '98.1/4분기중 재특조달금리 ('98.2/4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결정금리)가 급격히 상승될 경우 '98.2/4분기중 별도의 운용금리 및 적용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예정

3. 1998년도 운용금리 결정내용

〔단위 : %〕

소 관	사 업 명	융자금리	대출금리
재정경제부	수출입은행융자	7.5	8.5
	중소기업은행융자	8.5	9.5
	지방채인수	7.5-8.0	-
	대외경제협력기금	7.5	-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7.5	-
교육부	서울대병원 지원	8.5	8.7
	사학진흥기금	7.5	-
농림부	양축자금	7.5	8.5
	농업경영자금	7.5	8.5
	농지관리기금	7.5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5	-
산업자원부	산업기반기금	7.5	-
	산업기술자금	7.5	8.0
	대한석탄공사융자	7.5	7.7

소 관	사 업 명	물자등급	내환등급
환경부	지방상수도지원	7.5	7.6
	환경개선자금	7.5	8.0
	환경기술개발및산업화자금	7.5	8.0
	공단폐수처리시설	7.5	7.7
	환경개선특별회계	7.5	-
건설교통부	광역상수도건설	7.5	7.7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8.5	8.7
	복합화물터미널건설	7.5	7.7
	일반화물터미널건설	7.5	7.7
	국민주택기금		
	- 근로자주택건설자금	7.5	-
	- 근로자주택구입자금	8.5	9.0
	- 근로자주택전세자금	7.5	7.5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7.5	-
	도시영세민주거개선	7.5	8.0
	물류표준화파렛트추진	7.5	7.7
내무부	광주도심철도이설	7.5	-
보건복지부	영세민생업자금	7.5	8.0
	장애인자활자금자금	7.5	8.0
	민간병원시설확충	8.5	9.0
	신약개발지원	7.5	8.0
	저소득부양가정지원	7.5	8.5
	장례예식장지원 8.5	8.7	
	정신질환진료시설확충	8.5	9.0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진흥기금	7.5	-
해양수산부	수산개발		
	- 어업질서확립자금	7.5	8.0
	- 영어자금	7.5	-
	- 해외자원생산운영자금	8.5	9.0
	- 신어장개발지원자금	8.5	9.0
	내항선계획조선	8.5	9.0
	양산ICD조선지원	7.5	7.7
특허청	특허기술정보센터	8.5	8.7
정보통신부	행정전산망투자상환금	8.5	8.7
	정보화촉진기금	7.5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7.5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8.5	-
농촌진흥청	종자기금	8.5	-
철도청	철도사업 특별회계	7.5	-
산림청	합판 및 보드류시설자금	7.5	8.0

女有四德 之譽

女有四德 之譽하니

一日 婦德이요

二日 婦容이요

三日 婦言이요

四日 婦工也니라

〈 여자가 행해야할 네가지 덕의 아름다움이 있으니

첫째는 부덕 즉, 덕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는 부용 즉, 품위를 갖춘자태가 있어야 하며

셋째는 부언 즉, 언행이 바라야 하며,

넷째는 부공 즉, 솜씨가 있어야 하느니라〉

부녀자가 지켜야 할 네가지 덕행을 말함

〈明心寶鑑 女婦0〉

濟州 咸德農協 主管 農協連合골板紙工場 新設 計劃
中企廳長 農協 固有業種 無斷 參與 違法 警告
農協 골板紙 直營工場 違法 不當 들어 中止建議 골板紙組合

금년들어 제주도 소재 북제주군 함덕농업협동조합이 주관하여 도내 20개 단위 농업협동조합이 참여, 50억여원을 투입, 감귤포장용 골판지상자제조 농협연합골판지공장 신설계획에 대하여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류종우)에서 중소기업청장, 농림부장관 등에『중소기업 고유업종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에 대한 농협직영공장 영위의 위법성에 따른 설립추진 계획 중지조치 건의를 한 바, 중소기업청장은 현행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협도 대기업자의 범위에 해당되어,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골판지상자 제조업에의 참여는 제한되고 있으며, 농협이 무단으로 동 사업을 개시할 때에는 동법 제29조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었음』을 경고하고,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 발전과 산업구조 개선에 기여되는 것임으로 농협의 고유업종 참여는 자제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음은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청장, 농림부장관, 농협중앙회장, 농협중앙회 제주도지회장, 중소기협중앙회장, 제주함덕농업협동조합장등에게 보낸 동건 건의서 전문이다.

'98은 골판지포장공업 구조재편 대응력 강화의 해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KOREA CORRUGATED PACKAGING CASE INDUSTRY ASSN.

우137-060 서울 서초 방배 1669 성산빌딩 6F /TEL(02)594-0381 /FAX(02)594-1310 /담당:김진무

문서번호 골포협98(조정3) 151호
시행일자 1998. 3. 25
수 신 중소기업청장, 농림부장관, 농협중앙회장, 농협제주지회장, 기협중앙회장, 함덕농협장
참 조 기업협력과장, 농업금융과장, 자재부장, 자재과장, 산업진흥과장, 전무
제 목 중소기업고유업종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제조업에 대한 농협 직영공장 영위의 위법성에 따른 설립 추진 계획 중지조치 요청

1. 귀조합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폐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인가 제127호

(1984.11.17)로 승인된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을 소관하는 비영리 공법인입니다.

3. 최근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귀 제주 함덕농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제주도내 20개 단위농협이 참여하여 50여억원을 투입, 감귤포장용 골판지상자제조 제주농협연합 골판지공장 신설을 추진중이라 하는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된『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제조업』은 동법 제4조에서『대기업자등은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또는 확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 2호에서『대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 대기업에는 상법상의 대기업 법인 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공법인인 농협, 수협, 축협등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동법이 1995년 1월 5일부 법률 제4898호로 개정될 당시, 동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각 부처간에 조회 합의 한 것으로 되어 있음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농협도 대기업으로 보게 되어, 동 고유업종 골판지 포장제조업을 신규 참여함은 위법이 되는 것으로

4. 이미 이와 같은 법적근거에 따라 기존 농협 골판지포장 직영공장인 경북능금조합 골판지포장공장, 강원도 우천농협 골판지포장공장, 경남남지농협 골판지포장공장, 광주 농협 골판지포장공장, 제주감귤농협 골판지포장공장도 1997년 12월 29일의 산업자원부, 농림부, 농협중앙회, 5개 농협공장, 중소기협 중앙회 등 관계관 회의와 그후 농협 5개 공장현지 일체조사 및 법의 절차에 따른 위법신고를 시행토록한 바 있습니다.

5. 그럼으로 이러한 정부의 고유업종 정책과 다음사항을 참조하시어 귀 농협등이 설립 추진하고 계시는 농협 골판지포장 직영 공장 설립 계획은 이를 중지 조치하시고, 그 여유있는 자금은 농산물 가공 사업 또는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현재 실업으로 농촌에 귀농 정착하려는 신농가 지원금으로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음

1. 요청사항

『귀 제주함덕농업협동조합이 계획 추진하고 계시는 농협 연합 골판지포장 직영 공장의 설립은 이를 중지하시고, 동 여유 자금은 농산물의 가공사업을 추진하시거나, 최근 실직으로 귀농하려는 신농가 지원금으로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농협이 고유업종 골판지포장 직영공장을 영위함이 위법 부당한 이유

① 1995. 1. 5일부 개정 된『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은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 금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고유 업종으로 정부정책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동법 제2조 2호에서는『대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하여, 정부, 농협, 축협등도 대기업으로 보게 됨으로 농협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골판지포장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② 골판지포장제조업은 전형적인 중소기업형이기 때문에 정부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정책상

중소기업영역을 보호하는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이며, 또한 정부는 법령에 의거,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의 단체수의계약 물품으로 지정된 동 골판지상자에 대하여, 법률상 우선 구매해 주어야 할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농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고유업종 골판지상자제조업을 직영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③ 농업협동조합이라는 공공기관이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이용하여 농산물 가공사업이 아닌 공산품가공 골판지포장공장을 설립하여 골판지상자가 필요한 산하 농민 조합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배타적 독점공급을 하는 내부자 거래 행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농협 운영공장 생산 골판지상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일반 골판지상자 제조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현행제도는 조세 형평원칙에 반하며, 이로 인한 불공정 가격경쟁이 되고 있음은 공정거래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⑤ 앞의 기 설립된 5개 중소기업 고유업종 골판지포장 직영공장 농업협동조합들은 농림부 장관의 『농협직영 생산 골판지상자는 관내 조합원에만 공급』, 또는『시설확대지양』지시 (농림부 금융27117-1314 〈1987.7.6〉)와 『영농자재인 골판지상자의 직접생산 참가는 제한하며』, 『농협이 중소기업고유업종인 골판지상자 제조 사업을 부득이 추진할 경우는 관련단체와 충분히 협의 처리할 것』등의 지시에도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⑥ 농협 직영공장의 설립 목적은 포장재의 염가 적기공급에 있다고 하나, 실제 대농민 농협 공급가격은 일반 골판지포장업자 공급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으며, 수지타산을 위하여 전국농협, 농민을 찾아다니며 거래함으로 물류비가 더 들고, 적기 공급에도 차질이 있으며, 농협 직영공장 관리책임 농협은 도내농협이 일반 골판지포장업자로 부터 골판지상자를 구입할 경우, 도 지역본부의 압력(?)등으로 강제 영업행위를 하는 사례와 농협공장이 생산능력부족으로 처리못하는 주문받은 상자를 일반골판지상자 가공업자에게 외주하청하고 있어, 농협 내적 부조리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과 여론도 들었습니다.

⑦ 전국에 160개의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일반생산업체와 800여개의 골판지상자 가공업체가 있으며, 가동률은 68%에 불과하여, 1996-97년간 골판지포장업자 17개사가 부도 도산되어, 막대한 골판지포장제조 설비의 여력이 남아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직영 골판지포장공장의 신설투자는 낭비투자가 되는 것이오니, 농협 직영 골판지포장공장 사업은 중지케 하고, 이를 농산물 가공공장등 투자에 전환시킴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유첨 : 1. 중소기업고유업종정책 관계법령 해당 조문 1부
2. 96-97년도 골판지포장제조 일관업체 휴폐·부도 현황 1부
3. 농림부장관의 관내 농협조합원에만 납품 확약 공문 1부
4. 농림부장관의 농협의 중소기업고유업종 골판지포장상자 제조업 참여제한 지시공문 1부

끝.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이 사 장 류 종 우

濟州咸德農協 골板紙工場新設計劃 골板紙組合建議에 對한 中企廳長 回信

중 소 기 업 청

우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 (02)503-7931 / 전송 503-2512 / 담당 최열수

문서번호	기업 55470-53
시행일자	1998. 4. 17. (년)
받 음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참 조	
제 목	건의서 회신

1. 귀 조합에서 우리청에 제출한 건의서는 제주 함덕농협이 주관하고 제주도내 20여개 단위농협이 출자하여 중소기업고유업종인 골판지상자 공장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를 중지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2. 이에 대해서는 주관농협인 제주함덕농협에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농협도 대기업자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고유업종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됨을 통보하고, 단위농협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도 제주함덕농협 등에 대해 골판지 공장 설립계획이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제주 함덕농협 앞 공문사본 1부
2. 농협중앙회 앞 공문사본 1부

끝.

중 소 기 업 청 장

골板紙包裝組合 建議에 對한 中企廳長의 對 咸德農協 回信

중 소 기 업 청

우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 (02)503-7931 / 전송 503-2512 / 담당 최열수

문서번호	기업 55470-
시행일자	1998. 4. . (년)
받 음	제주함덕농업협동조합
참 조	
제 목	골판지상자 공장설립계획 재검토 요청

1.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및 (주) 제주판지 등 3개사에서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여 우리청에 이송된 진정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골판지상자 제조업은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서 귀 조합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골판지상자 공장설립계획을 중지 철회하여 달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2. 현행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귀 조합도 대기업자의 범위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고유업종인 골판지상자 제조업에의 참여가 제한되며 무단으로 동 사업을 개시할 경우 동법 제29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는 법정신을 감안하시어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골판지상자 제조업에의 진입을 신중하게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정서 사본 1부.

끝.

중 소 기 업 청 장

中小企業廳, 農協旣存 固有業種 골板紙工場 條件附受理

農協組合員以外 販禁 · 外注生産 販賣도 禁止

중 소 기 업 청

우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 (02)503-7931 / 전송 503-2512 / 담당 이상훈

문서번호	기업 55473-
시행일자	1998. 4. . (년)
받 음	받는곳 참조
참 조	
제 목	중소기업 고유업종 영위신고 수리

1. 중소기업 고유업종 영위신고('98.1.12)와 관련 입니다

2. 귀 조합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고유업종인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을 무단 참여하고 있음이 우리청조사결과 확인되었으며, 이는 동법 부칙 제4조 제2항(영위미신고) 및 동법 제4조 제2항 규정(확장미신고)을 위반한 것입니다.

3. 그러나 귀 조합은 WTO 체제하에서 외국 농산물로부터 우리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산물 포장재의 적기공급, 농산물의 포장개선과 규격화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왔고,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관련 중소업계와 양해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불문코자 하오니 향후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가. 현존 생산설비의 능력범위내에서 생산할 것
나. 생산 · 판매실적을 1년단위로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할 것
다. 조합원이 아닌 타기관 및 일반수요자에 대한 판매금지
라. 외주생산에 의한 판매금지

4. 아울러 이번 신고건에 대해서는 귀 조합이 신고한 생산설비 범위내에서 이를 수리하며, 향후 신고된 생산설비를 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중 소 기 업 청 장

받는곳 : 우천농업협동조합장, 남지농업협동합장, 광주농업협동조합장,
경북능금협동조합장,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장